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책금융공급총액 제한 및 공급현황 국회 제출〉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34)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공급총액 제한 및 공급현황 국회 제출 (안 제39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동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9.

다.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공급총액 제한 및 공급현황 국회 제출 (안 제39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공급총액 제한 및 공급현황 국회 제출 - 공공기관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다만, 대규모 재해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에는 제한을 완화 가능)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급현황, 공급한 정책금융의 연체 및 손실처리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반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제출

정책금융은 민간의 상업금융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민간의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지원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정부의 재정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자금의 가용성·만기·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을 의미함.

개정안은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공급총액을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책금융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융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음¹⁾.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별도로 금융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²⁾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327개 공공기관 중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금융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18개 금융공공기관³⁾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준시장형 공기업인 국토교통

-
- 1) 성승제, 「금융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 업무를 주요 업무로(전체 사업비의 80% 이상) 하는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

부 소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용보증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인 기획재정부 소관의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 소관의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으로 총 18개 기관이 금융공공기관으로 분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와 금융공공기관]

분 류		주무부처	금융공공기관
공기업(1)	준시장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 기관 (8)	기금 관리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9)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분류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은 대출(융자),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16개 금융공공기관⁴⁾에서 741.4조원의 대출잔액 및 935.4조원의 보증잔액, 104.2조원의 보험잔액, 그리고 87.4

4)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18개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부 위탁자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므로 정책금융 공급과는 차이가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보 예금 금액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체 예금으로, 정책금융 공급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금융 공급 잔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조원의 투자잔액 등 총 1,868.4조원의 대출, 보증, 보험, 투자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연도별 정책금융 잔액은 2020년 1,468.7조원, 2021년 1,641.5조원, 2022년 1,782.6조원 및 2023년 1,868.4조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2.3%, 2021년 11.8%, 2022년 8.6%, 2023년 4.8% 등으로 2023년의 총 잔액 합계 1,868.4조원은 2018년 1,242.6조원 대비 625.8조원(50.4%) 증가한 수치임⁵⁾.

[금융공공기관의 각 연도별 정책금융 공급잔액]

(단위: 조원, %)

구분	2018 (a)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금액 (b)	(비중)	(b-a)	(b-a)/a
대출 (전년대비 증감률)	515.9 -	542.5 (5.2)	608.4 (12.1)	659.0 (8.3)	708.0 (7.4)	741.4 (4.7)	(39.7) -	225.5 -	43.7 -
보증 (전년대비 증감률)	595.0 -	628.6 (5.6)	713.1 (13.4)	816.5 (14.5)	902.4 (10.5)	935.4 (3.7)	(50.1) -	340.4 -	57.2 -
보험 (전년대비 증감률)	74.8 -	77.6 (3.7)	76.4 (△1.5)	83.3 (9.0)	89.5 (7.4)	104.2 (16.4)	(5.6) -	29.4 -	39.3 -
투자 (전년대비 증감률)	56.9 -	59.0 (3.7)	70.7 (19.8)	82.4 (16.5)	82.5 (0.1)	87.4 (5.9)	(4.7) -	30.5 -	53.6 -
합계 (전년대비 증감률)	1,242.6 -	1,307.7 (5.2)	1,468.6 (12.3)	1,641.2 (11.8)	1,782.4 (8.6)	1,868.4 (4.8)	(100.0) -	625.8 -	50.4 -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5)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의 최대 확대를 추진(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보도자료, 2020.4.22.,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2020.3.24.)하였고, 코로나 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

한편,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기관을 말하며, 현재 기관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이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15개 기관이며⁶⁾, 이 중 정책금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관⁷⁾이 해당됨.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규정된 15개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2022년 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결손인 기관은 아래의 기술보증기금(△6.9조원), 신용보증기금(△4.9조원), 한국광해광업공단(△3.7조원), 대한석탄공사(△1.5조원)의 4개 기관이며, 정부는 이들 4개 기관에 대하여 최근 5년(2019~2023년)간 출자, 출연, 보조금 등을 통해 총 7조 5,747억원을 지원하였음.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정부는 출연의 방식으로 각각 5조 3,819억원, 1조 733억원을 지원하였고,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2023년 대위변제액⁸⁾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바,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6) 손실보전 공공기관 현황[참고1]

7)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8) 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란 보증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특정업체에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의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

[2022년 말 이익잉여금이 결손인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액(2019~2023)]

(단위: 억원)

기관명	기관 유형	2022년 말 이익 잉여금	정부지원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019 ~ 2023)
기술보증 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9,210	출연	1,030	4,883	3,500	1,320	0	10,733
신용보증 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9,465	출연	1,610	33,626	5,096	11,800	1,687	53,819
한국광해 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37,203	출자,출연, 보조	-	-	2,653	2,911	4,252	9,816
대한석탄 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5,111	출자	271	316	285	271	236	1,379
합계		△170,989	-	2,911	38,825	11,534	16,302	6,175	75,747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정책금융 공공기관 최근 5년간 대위변제액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구분	‘19	‘20	‘21	‘22	‘23
기술보증기금	보증	9,882	8,379	6,735	6,701	11,105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3,571	4,146	6,225	6,241	15,198
신용보증기금	보증	15,559	15,100	14,312	13,599	22,759
	보험	765	603	608	473	62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	2,918	3,247	3,221	3,522	8,795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4,648	6,422	6,036	10,581	49,229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	756	644	574	417	686
	보험	7,425	2,502	3,750	3,982	1,892
한국산업은행	보증	733	181	31	63	37
한국수출입은행	보증	252	257	249	175	117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1,872	2,624	2,434	3,375	6,356
한국해양진흥공사	보험	181	-	-	-	-
합 계		48,562	44,105	44,175	49,129	116,796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의 공급총액 증가를 연간 5% 이내(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정책금융 공급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둘째, 민간금융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⁹⁾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일률적인 총액제한은 정책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데 차질을 초래하여 정책금융의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과

9)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지원,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주력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정책자금 신속 지원 등

같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공급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금융위원회는 연간 정책금융 공급액 증가율을 일률적으로 5% 이내로 정하는 것은 정책금융의 적시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총액을 제한하는 계약체결한도를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동 한도 이내에서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성 기금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은 민간 부담금(채권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시장실패영역에 대한 재정융자 사업을 수행하며, 정책 환경과 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정책금융 공급 총액 제한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기금의 설치목적인 신축적 운용¹⁰⁾에 상충 소

1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지가 있고,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수단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은 우리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목적으로 여타의 정책금융과 차이가 있고, 수출 활성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총량 제한 대신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적시에 유연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특정 시점에 사용되는 예보의 자금지원은 연례적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과는 상이하므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특정 기관의 사업을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재도 개별법 등을 통해 기관별로 리스크 관리¹¹⁾를 통해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투입위험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임.

11)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은행법, 국제규제(바젤), 금감원 감독규제 등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은 신용평가모델,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부실징후 감지, 사고율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주택보증공사는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증배수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9조의3(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등) ①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정책금융”이라 한다)를 합산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정책금융공급총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공급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초과된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규모와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 공급액 현황, 공급한 정책금융의 연체 및 손실 처리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02)6788-5148

참고1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현황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45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제2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제4항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법」 제29조제3항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제2항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6조제2항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기관명	법률 및 조항	주요 내용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1조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2항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제2항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